

##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이 선언문은 IFLA의 IFLA/FAIFE(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위원회)가 작성하여, 1999년 3월 25일 IFLA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임.

[Alarabia](#), [Balgarski](#), [Bangla](#), [Bosanski](#), [Cesky](#), [Chaltibhasa](#), [Dansk](#), [Deutsch](#), [English](#), [Español](#), [Farsi](#), [Français](#), [Hrvatski](#), [Íslenska](#), [Italiano](#), [Kartuli](#), [Lietuviskai](#), [Magyar](#), [Nederlands](#), [Nihongo](#), [Norsk](#), [Polski](#), [Português](#), [Russkij](#), [Shqip](#), [Srpski](#), [Suomeksi](#), [Svenska](#), [Tagalog](#), [Tamil](#), [Türkçe](#), [Viet](#), [Zhongwen \(simplified\)](#), [Zhongwen \(traditional\)](#)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촉진한다.

IFLA는 인간이 지식과 창조적 사상,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물에 접근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동일한 원칙의 양면임을 확신한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IFLA는 지적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주장한다.

IFLA는 이에 따라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이 지적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IFLA는 회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과 사상, 그리고 문화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평생학습, 자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은 지적자유와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원한다.
- 도서관은 지식과 지적활동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게 한다.
- 도서관은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이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아닌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조직, 배포하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한다.
-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도서관 이용자는 사생활 보호와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의 신원이나 그들이 이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 시켜서는 안 된다.
- 공공재원으로 유지되며 공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지적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도서관의 사서와 직원들은 이상의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사서와 도서관 전문직원은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의 수행이 상충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